

06.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3년 국가직 7급

- ① 양벌규정 중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지만,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도 고의·과실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인의 처벌은 그 대표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
- ②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요건으로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 하여야 한다.
- ③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과 같이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설 ▶

- ① (X)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2009도3876) /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O) 대법원 1983.3.22. 80도1591
- ③ (O) 대법원 1999.7.15. 95도2870전합
- ④ (O) 대법원 2009.6.11. 2008도6530

정답 ①

07. 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지,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양벌규정과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종업원이 미수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 ㉢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주·행위자 관계와 공범관계의 차이,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의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O) 대법원 2010.9.30. 2010도17797 전원합의체
- ㉡ (O) 대법원 2018.10.30. 2018도17872
- ㉢ (O) 대법원 2025.5.1. 2024도15290
- ㉣ (X) 법인의 자수가 인정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5. 95도391)

정답 ②

16.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년 해경 승진, 25년 해경승진(경위)

- ①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

- ① (O) 대법원 2018.8.1. 2015도10388
- ② (X)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2008도6530)
- ③ (O) 대법원 2011.7.14. 2009도5516
- ④ (O) 대법원 1995.12.12. 95도1893

정답 ②

17.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7년 해경간부, 18년 해경 승진

- ① 다단계 판매원은 구 방문판매업의 양벌규정이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법행위를 한 때,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해설 ▶

- ① (O) 대법원 2006.2.24. 2003도4966
- ② (O)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87도1213)
- ③ (X)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8. 94도3325)
- ④ (O) 대법원 1995.7.25. 95도391

정답 ③

07. 다음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2년 해경 승진

- 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 ②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설 ▶

- ① (O)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상황에 대한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 ② (O) 옳은 지문
- ③ (X)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고의에는 영향이 없고 책임이 조각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가 된다.
- ④ (O) 옳은 지문

정답 ③

08. 다음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5년 경찰2차, 25년 해경수사간부

-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가 회피 가능했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를 조각하게 되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 ㉢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에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불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을 초래한다.
-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불법은 형성되지만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고의가 형성되지 않아, 결국 고의책임 및 고의형벌이 조각되어 법효과에 있어서 금지착오와 같이 취급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 (O)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를 법률의 착오(형법 16조)로 보고, 회피가능성(=정당한 이유)에 따라 처리. 회피 불가능(정당한 이유 O) → 책임조각 / 회피 가능(정당한 이유 X) → 고의범.
- ㉡ (O)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 위법성조각사유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그 전제사실 착오는 구성요건착오로 처리 →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 과실범 검토.
- ㉢ (O) 제한적 책임설(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 — 형법 15조 1항 유추 →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 정범의 고의범 X → 제한적 종속형식상 공범도 성립 X → 처벌 흠결 초래(이론적 단점).
- ㉣ (X)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어 고의의 불법은 형성되나, 심정반가치가 탈락하여 책임고의가 부정됨 → 고의책임·고의형벌 조각, 고의범 처벌 X /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 법효과 측면에서는 금지착오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된다. 착오를 금지착오로 취급하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고의범 처벌)이다.

정답 ③

03. 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3년 해경 승진

— < 보 기 > —

㉠ 유기 등 치사상죄
㉡ 불법체포죄
㉢ 재물손괴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미수범 처벌 O	미수범 처벌 X
㉡ 불법체포죄	㉠ 유기 등 치사상죄
㉢ 재물손괴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답 ②

04. 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6년 해경2차, 17년 경찰1차, 19년 해경3차

— < 보 기 > —

㉠ 인질치사상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퇴거불응죄
㉣ 중립명령위반죄
㉤ 사기죄
㉥ 해상강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재물손괴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미수범 처벌 O	㉠ 인질치사상죄 ㉢ 퇴거불응죄 ㉤ 사기죄 ㉥ 해상강도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재물손괴
미수범 처벌 X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중립명령위반죄

정답 ②

05

미수론